

목 차

- I . 설 계 설 명 서
- II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III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IV . 보 안 대 책
- V . 기 타 사 항
- VI . 예 정 공 정 표
- VII . 설 계 예 산 서
- VIII . 과 업 위 치 도

I. 설 계 설 명 서

I.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섬진강댐 및 섬진강댐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섬진강댐 및 섬진강댐하류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과업대상 : 지방하천 8개소(섬진강, 은천, 세동천, 구신천, 임실천, 옥녀동천, 추령천, 갈담천), L = 138.24km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 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마) 지역 개황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타)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2018. 12. 12,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 나.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즉시 제공, 협조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라. 과업착수 후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 바.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조사항목은 국가수질측정망 제공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4. 세부과업내용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가)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나) 계획의 추진 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을 제시한다.
- 다) 계획의 규모와 입지, 계획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2) 대상지역 설정

- 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나)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다)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으로 인한 영향의 시간·공간적 범위를 개괄적이고 정성적인 형태로 파악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 구상안

- 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도에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한다.

4) 지역개황

-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5) 대안의 설정

- 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한다.

6)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가) 평가항목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 항목별로 평가 범위 및 방법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7)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 요약문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나)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가)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나)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 개황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다)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

가) 주민의견 수렴 개요

(1)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2)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3)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4)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2)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

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나)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 (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 (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가)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다)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라)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가)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나)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다)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4)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2)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3)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 라. 하천기본계획 용역의 공정(과업)이 변경되어 본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가. 조사구간의 시·중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 조사수량 및 항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 가.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라. 해당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2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5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IV. 보 안 대 책

IV.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V. 기 타 사 항

V.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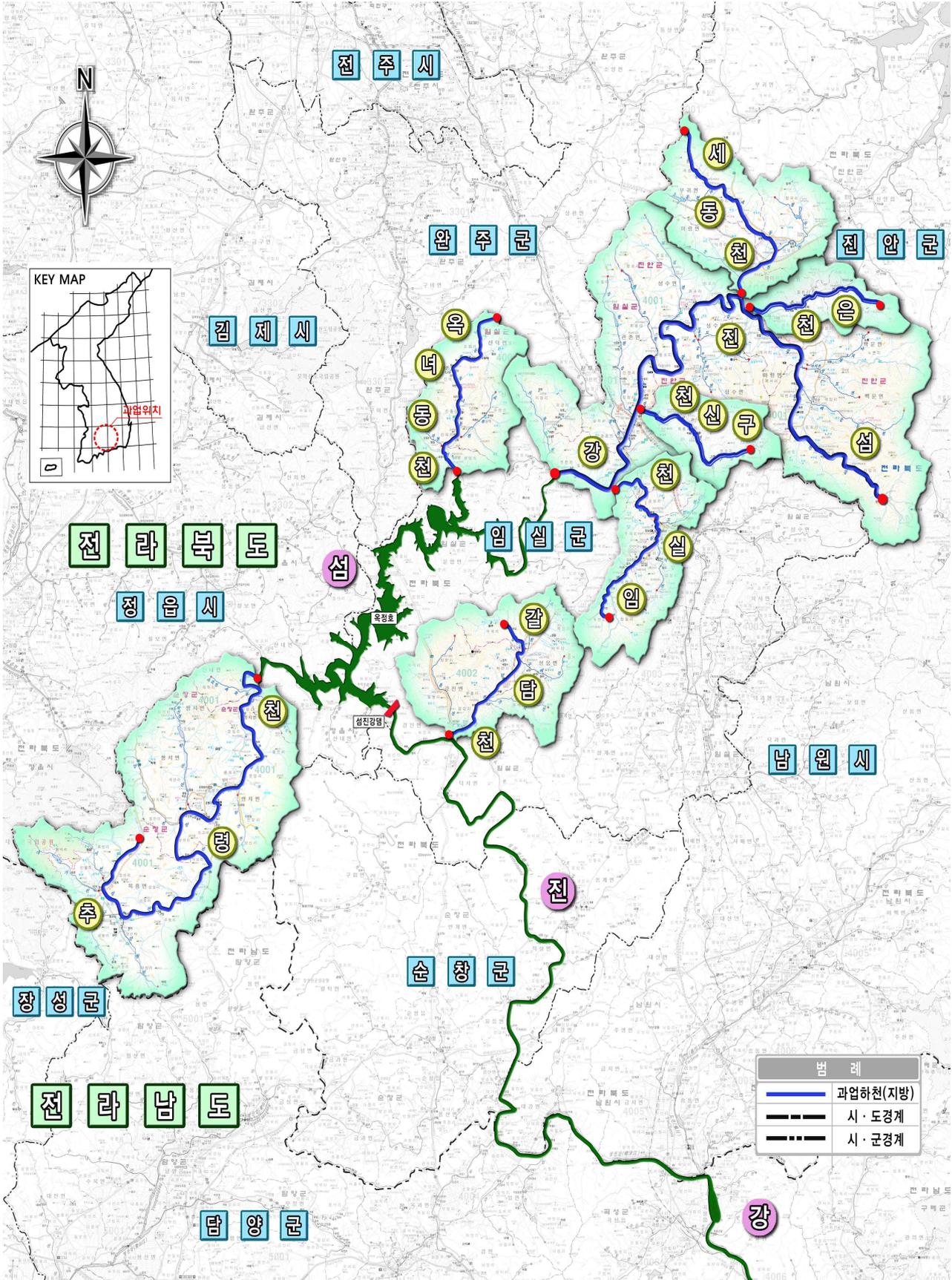
VI. 예 정 공 정 표

VI.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정 계 획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1. 과업계획 수립 (사업개요 파악)		■															
2. 자료수집 (관련계획 및 협의내용)		■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3.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	■	■												
	4. 기초 현황조사																
	● 환경질측정		■	■			■	■		■	■		■	■			
	● 동식물상조사		■	■			■	■		■	■		■	■			
	5. 초안보고서 작성				■	■	■										
	6.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7. 본평가서 작성									■	■	■	■				
	8. 관계기관 협의													■	■	■	■

VII. 설 계 예 산 서

VIII. 과 업 위 치 도



범례	
	과업하천(지방)
	시·도경계
	시·군경계